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제8조의2제3항)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기능을 규정함

나.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6)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 부터 7호까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자. 이용지원시스템의 업무 위탁 규정 개정(제20조제4항제3호)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시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호를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 기능
2. 심사·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3.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정보 및 검색 기능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공문
2.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지정평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인과 지정평가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인증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기법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지정평가기관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인증평가가 어려운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신청인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평가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이하 ‘보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 보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보안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은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4(보안인증의 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

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안인증을 받은 자에게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은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보안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5(보안인증의 수수료)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평가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보안인증평가원의 수
2. 인증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3. 그 밖에 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6(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①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상시근무 보안인증평가원 4명을 포함한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능력, 피해보상 대책을 갖출 것
4.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것
5.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된 시설 및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보안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방법·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평가 및 재지정 등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7(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6.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7.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의 조사

제2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
책 개발·기술 지원 및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
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중전의 나목) 5)를 6)으로 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
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및 이에 준하
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중전의 다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 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업무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 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부 칙

이 영은 2023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 ② (생 략)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u>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u> <u>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u> <u>(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u> <u>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지원</u> <u>시스템에 다음 각 호를 기능을 반</u> <u>영하여야 한다.</u> 1.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 <u>신청 기능</u> 2. 심사·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 <u>록 및 관리 기능</u> 3.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정보 및 <u>검색 기능 <개 정></u>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 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보안인증의 방법·절차</u> <u>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u> <u>른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u> <u>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u> <u>“인증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u> <u>보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u> <u>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u>
④ · ⑤ (생 략) <u><신 설></u>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공문
2.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지정평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인과 지정평가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인증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방법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지정평가기관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인증평가가 어려운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신청인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평가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

<신 설>

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
회의 심의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
안인증서(이하 ‘보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안인
증서의 발급 등 보안인증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보안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
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유효

<신 설>

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은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4(보안인증의 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안인증을 받은 자에게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은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보안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신 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5(보안인증의 수수료)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평가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보안인증평가원의 수
2. 인증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3. 그 밖에 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6(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①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
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
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
출 것

2. 상시근무 보안인증평가원 4
명을 포함한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
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능력, 피해보상 대책을 갖
출 것

4.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
행 능력을 갖출 것

5.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
무를 수행하고 평가자료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된 시
설 및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보안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신 설>

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방법·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평가 및 재지정 등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7(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6.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7.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의 조사

④ -----

-----.

1. ~ 2. (생략)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이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기술 지원 및 이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

		위반	위반	상 위반
<신설>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300	600	1,000

[별표 3] 신설

- 정되는 경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300	600	1,000
마.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300	600	1,00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신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업무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3조의4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7